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안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621

발의연월일: 2025. 3. 4.

발 의 자 : 홍기원 · 김한규 · 정을호

조정식 • 차지호 • 이해식

박정현ㆍ허 영ㆍ최기상

조승래 • 윤호중 • 김영환

한정애 • 박상혁 • 이용선

의원(15인)

제안이유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은 대표적인 남북경제협력사업으로 남북평화의 상징이었으며, 남북경제협력사업은 1988년 7·7선언 이후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의 화해 진전, 한반도 긴장 완화에 큰 기여를 하였음.

그러나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정부가 금강산 관광사업을 잠정 중단한 이후로 현재까지 금강산 관광사업은 재개되지 못하고 있고, 2010년 이후에는 정부의 5·24조치로 방북이 불허되는 등 남북경제협력이 중단되었으며, 개성공단 역시 2016년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하여 그 운영이 전면 중단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금강산 관광 관련 기업, 개성공단 입주기업, 남북경제협력사업 자 등은 경영 외적인 사유로 발생한 사업 중단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임에도 피해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개성공단사업 전면중단 또는 정부의 5 · 24조치로 인하여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개성공단사업 전면중단 또는 5· 24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에 발생한 투자 및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통하여 이들의 생활과 기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남북경제협력사업자, 개성공단 입주기업, 개성공단 협력업체에 대한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 소속으로 남북경제협력사업자등에 대한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함(안 제3조).
- 다.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안 제4조).
- 라.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위 워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그 지급 여

부와 금액을 결정하며, 보상금의 지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마. 보상금 지급 관련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8조).
- 바.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함(안 제9조).
- 사.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4조).
- 아.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 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안 제 15조).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개성공단사업 전면중단 및 5·24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남북경제협력사업자,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개성공단 협력업체에 대한 보상을 통하여 이들의 생활과 기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이란 2008년 7월 11일 금강산에서 발생한 관광객 피격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그 다음날 정부가 취한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조치를 말한다.
- 2. "개성공단사업 전면중단"이란 2016년 2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말한다.
- 3. "5·24조치"란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2010년 5월 24일 북한 선박의 남한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교역 중단,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등 정부가 취한 대북조치를 말한다.
- 4. "남북경제협력사업자"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의 승인을 받은 교역당사자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 5. "개성공단 입주기업"이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으로 서 2016년 2월 10일 당시 운영 중이었던 기업을 말한다.
- 6. "개성공단 협력업체"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2016년 2월 10일 당시 물품, 원자재·부자재, 용역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던 기업·기관 등을 말한다.
- 7. "피해자"란 금강산 관광사업, 5·24조치로 인한 피해기업,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개성공단 협력업체(이하 "남북경제협력사업자등"이라 한다) 중 제3조제1항에 따른 남북경제협력사업자등에 대한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남북경제협력사업자등에 대한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 ① 남북경 제협력사업자등에 대한 피해 보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 소속으로 남북경제협력사업자등에 대 한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개성공단사업 전면중단 및 5·24조치로 인한 직접적·간접적 피해규모 조사에 필요한 사항
 - 2.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 3. 피해자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4. 피해지원으로 대출・지급한 남북협력기금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피해자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남북경제협력사업자등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에 추천하는 사람이 6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통일부·법무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남북 경 제협력사업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4. 남북경제협력사업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⑤ 제2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 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 장이 지명하는 통일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 8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보상금)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한 보상금 (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며 보상금의 지급기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보상금의 지급신청) ①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보상금의 심의와 결정) ① 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120일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결정기간의 연장사유와

결정 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결정서의 송달) ①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 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재심의)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7조에 따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및 그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중 "180일"은 "90일"로, 같은 조 제2항 중 "120일"은 "60일"로 각각 본다.
- 제9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의 지급) ① 제7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② 그 밖에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보상금에 대한 권리 보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사

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제11조(조세 면제) 보상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12조(보상금의 환수) ① 국가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 2.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3조(결정전치주의 등) ①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 경과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재심의 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제14조(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 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및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5조(소멸시효)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소멸한다.
-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남북경제협력사업자등이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개성공단사업 전면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7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와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9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 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0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 및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 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